

출산전후·유산사산휴가급여

● 사업목적

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,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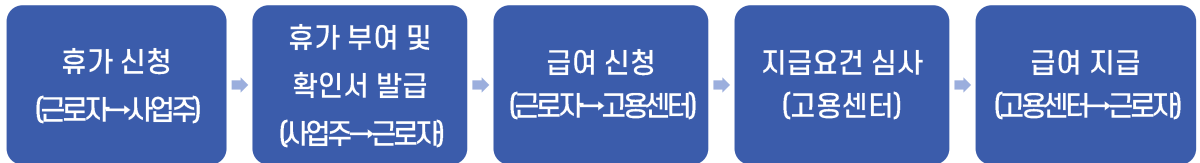
● 사업내용

구분	대상	내용	지원요건 등									
출산전후 휴가	임신 중 임 성	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(다태아 120일)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되어야 함 *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사업주 유급	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※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,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									
유산 사산 휴가	임신 중 유 산 · 사 산 한 여 성	임신 중 유산·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,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* 임신 11주 이내: 5일, 임신 12~15주: 10일, 임신 16~21주: 30일, 임신 22~27주: 60일, 임신 28주 이상: 90일	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, 청구한 경우									
출산 전 후 · 유 산 사 산 휴 가 급 여	상 동	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·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최초 60일 (다태아 75일)</th> <th>마지막 30일 (다태아 45일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우선 지 원 대 상 기 업</td> <td>·(정부)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·(사업주) 통상 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</td> <td>정부가 통상 임금 지급 (최대 200만원)</td> </tr> <tr> <td>대 규 모 기 업</td> <td>사업주가 통상 임금을 지급</td> <td>정부가 통상 임금 지급 (최대 200만원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최초 60일 (다태아 75일)	마지막 30일 (다태아 45일)	우선 지 원 대 상 기 업	·(정부)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·(사업주) 통상 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	정부가 통상 임금 지급 (최대 200만원)	대 규 모 기 업	사업주가 통상 임금을 지급	정부가 통상 임금 지급 (최대 200만원)	①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·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구분	최초 60일 (다태아 75일)	마지막 30일 (다태아 45일)										
우선 지 원 대 상 기 업	·(정부)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·(사업주) 통상 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	정부가 통상 임금 지급 (최대 200만원)										
대 규 모 기 업	사업주가 통상 임금을 지급	정부가 통상 임금 지급 (최대 200만원)										

●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원

구분	대상	내용	지원요건 등
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등	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	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·사산한 경우 출산전후(유산사산) 급여를 지급 지급기간: 90일(다태아 120일) 지급액: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%(상한 200만원, 하한 60만원)	①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③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

● 사업추진체계(지원절차)

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
- 부산고용복지+센터 : 051-860-1914
051-860-2903
051-860-1910
051-860-2063
- 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 : 051-760-7241~2
- 부산북부고용복지+센터 : 051-330-9943~4
051-330-9956